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월 15일, 조경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 의원)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등을 지역·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하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농경지의 용수공급 및 침수 예방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따라 농촌용수 개발사업, 배수개선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수요가 증가함.

현행법 제8조는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50헥타르(ha)] 미만인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또한 해당 정비사업의 경우, 모든 재원을 지방비를 통하여 마련함.

그런데, 중앙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 배수개선 등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요구됨에도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전라남도, 충청남도(논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으로서, 수혜면적 기준의 하향 조정(50ha → 30ha)을 통한 국비지원 기준 확대를 건의함.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혜면적 기준을 기존의 50만 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는 경지 정리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50만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업의 재원을 지방비에서 국비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기준이 50만제곱미터(50ha)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30ha)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이들 지구에서 시·도지사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도의 배수개선 사업, 농촌용수개발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진행이 이루어짐.

그 결과, 배수개선 사업에서 1조 74억원, 농촌용수개발 사업에서 3,020억 6,000만원으로 총 1조 3,094억 6,0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통하여 집행될 것이 예상됨.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고, 국가 주도로 보다 선제적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